제출부서 : 평생교육과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6. 11. .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1. 제안이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공기업 대행 시 관장의 임명·파견 근거를 마련하며,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확대와 프로그램 수강료 산정방식 개선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영시간 정비(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2)
나.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기준 완화(안 제11조제1항제2호카목)
다. 지방공기업 대행 시 관장의 임명 및 대행기관 파견 근거 마련(안 제13조제2항·제3항)
라. 프로그램 수강료 산정방식 개선(안 별표 2)
마. 부가가치세 인용 조문 정비(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6.10.12.~1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라. 기 타
- 규제사전심사 : 해당사항 없음(비규제 대상)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물가대책심의 : 원안동의

인천광역시 영종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오전 6시”를 “오전 9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카목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한 관장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의 지위·권한과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대행기관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수강료 상한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상한**(수강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구　　분	시　간	사용료(원)	비　고
공연장 186석 (804㎡)	오　전 (09:00 ~14:00)	40,000	○ 부가가치세 별도
	오　후 (14:00 ~ 18:00)	60,000	
	야　간 (18:00 ~ 22:00)	80,000	
다목적체육관 (706.44㎡) · 풋살장 (400㎡)	주　간 (09:00 ~18:00)	20,000	○ 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야　간 (18:00 ~ 22:00)	30,000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	1시간 1회 기준 (09:00 ~ 22:00)	5,000 (냉·난방포함)	

※ 비　　고

1. 1회란 하나의 공연·전시·행사를 말한다.
2. 해당 시간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3.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4. 준비 또는 예행연습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공연장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
   가. 30분 미만: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나.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1시간 이상: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
6.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7. 야간조명을 사용할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
8.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수탁자(대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위	사용료(원)	비고	
냉·난방기		1회	20,000	냉방기	7월~8월 의무 사용
				난방기	11월~3월 의무 사용
프로젝트		1회	20,000		
음향시설	마이크	1회/3개	10,000	추가 개당 5,000원	
	핀마이크	1회/1개	10,000		
	피아노	1회	30,000	조율 필요 시 사용자 부담	
	엠프/스피커	1회	80,000		
무대조명	기 본	1회	20,000		
	포그머신	1회/1대	20,000	포그머신 리필액 별도 부담	
	무빙라이트 스팟	1일/1대	5,000		

3.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기준

기 준	수강료(원) 상한	비 고
1회 (2시간 이내)	5,000	

※ 비 고

1. 수강료 상한 기준은 체험형·강습형 프로그램 등에 모두 적용한다.
2. 필요시 실습부담비(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3. 세부 프로그램별 수강료 및 수강기간에 대하여 수탁자(대행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② (생 략) 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세부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④ (생 략)	제4조(휴관일 및 운영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오전 9시----------.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50퍼센트 감면 가. ~ 차. (생 략) 카.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② (생 략)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1. (현행과 같음) 2. ----------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두 자녀----------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생략) <신 설>	제13조(위탁운영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 자격을 갖춘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

현 행	개 정 안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한 관장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의 지위·권한과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대행기관과 체결하는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수강료 상한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수강료 상한**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
1. 사용료 상한(수강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 사용료 상한**(수강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현 행

구 분	시 간	사용료 (원)	비 고
공연장 186석 (804㎡)	오 전 (09:00~14:00)	40,000	○ 부가가치세 별도
	오 후 (14:00~18:00)	60,000	
	야 간 (18:00~22:00)	80,000	
다목적 체육관 (706.44㎡) · 풋살장 (400㎡)	조 간 (06:00~09:00)	15,000	○ 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주 간 (09:00~18:00)	20,000	
	야 간 (18:00~22:00)	30,000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	1시간 1회 기준 (09:00~22:00)	5,000 (냉·난방 포함)	

※ 비 고

1.~ 5. (생략)

6.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따로 부담한다.

7.~ 8. (생략)

3.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기준

기 준	횟 수	수강료(원) 상한
1개월	주 1회(월 5회 이하)	10,000
	주 2회(월 10회 이하)	15,000
	주 3회(월 15회 이하) 이상	20,000

※ 비 고

1. 실습부담비(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1회는 2시간 이내로 한다.
3. 세부 프로그램별 수강료 및 수강기간에 대하여 수탁자(대행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 정 안

구 분	시 간	사용료 (원)	비 고
공연장 186석 (804㎡)	오 전 (09:00~14:00)	40,000	○ 부가가치세 별도
	오 후 (14:00~18:00)	60,000	
	야 간 (18:00~22:00)	80,000	
다목적 체육관 (706.44㎡) · 풋살장 (400㎡)	<삭제>		○ 다목적체육관,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주 간 (09:00~18:00)	20,000	
	야 간 (18:00~22:00)	30,000	
동아리실, 프로그램실 등	1시간 1회 기준 (09:00~22:00)	5,000 (냉·난방 포함)	

※ 비 고

1.~ 5. (현행과 같음)

6.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

7.~ 8. (현행과 같음)

3.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기준

기 준	수강료(원) 상한	비 고
1회 (2시간 이내)	5,000	

※ 비 고

1. 수강료 상한 기준은 체험형·강습형 프로그램 등에 모두 적용한다.
2. 필요시 실습부담비(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
3. 세부 프로그램별 수강료 및 수강기간에 대하여 수탁자(대행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 및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26. 4. 28.]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명 : 「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관련조문 : 제11조제1항제2호카목(사용료 등의 감면),
제13조제2항 · 제3항(관장의 임명 및 파견),
별표 2 제3호(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기준)

○ 비용발생요인

① (세출) 수련관 관장 1명을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으로 임용함에 따른 인건비 발생

② (세입) 다자녀 가정 사용료 등 감면 대상 확대(세 자녀 이상 → 두 자녀 이상)에 따른 감면액 증가(세입 감소)

③ (세입)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기준 변경(1개월 단위 → 1회 5,000원)에 따른 수강료 수입 변동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관장 인건비

○ 임용인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1명

○ 담당업무 : [영종구 청소년 수련관] 관장으로 운영 총괄 및 관리

○ 산정기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별표 13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연봉하한액 적용

구분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86,606천원	57,708천원

○ 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봉액은 임용 시 결정되므로, 비용추계는 연봉 하한액 57,708천원을 기준으로 산정
(2026년도 기준을 적용하며,조례 시행일인 2027. 1. 1.부터 임용하는 것으로 가정)

○ 2차년도 이후 연봉 인상률은 인사혁신처고시 제2026-2호(2026. 1. 23.)에 따른 2026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3.5%를 기준으로 매년 3.5%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함

2) 다자녀 가정 감면 확대에 따른 세입 감소

○ 감면대상 : 두 자녀 가정의 청소년(50퍼센트 감면, 신규 대상)

○ 기초자료(2025년 실적, 청소년수련관 제출)

- 유료 이용 청소년 : 735명
- 이 중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청소년(현행 감면 대상) : 94명/감면액 1,502,500원
- 1인당 연간 감면액 : 1,502,500원 ÷ 94명 = 약 15,984원

○ 추정인원 : 유료 이용 청소년 735명에서 현행 감면 대상 94명을 뺀 641명 중 50%인 320명을 두 자녀 가정 청소년으로 가정

○ 산정방식 : 320명 × 15,984원 = 5,115천원(연간 세입 감소)

3)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기준 변경에 따른 세입 변동

○ 현　　행 : 1개월 기준 주 1회 10,000원, 주 2회 15,000원, 주 3회 이상 20,000원

○ 개 정 안 : 1회당 5,000원

○ 가　　정 : 모든 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 월 4주 기준(주 1회, 총 12회)으로 가정

○ 1인당 수강료 상한 비교(3개월 과정)

- 현행 : 10,000원 × 3개월 = 30,000원
- 개정 : 5,000원 × 12회 = 60,000원(현행의 2배)

○ 세입 변동 산정(2025년 실적 기준)

- 2025년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 15,245천원(유료 수강 735명)
- 개정 후 예상 수입(최대) : 15,245천원 × 2배 = 30,490천원
- 세입 증가(최대) : 30,490천원 - 15,245천원 = 15,245천원

○ 수강료는 상한 범위에서 구청장 승인을 받아 정하므로 위 금액은 최대 변동액임

나. 추계 결과

○ 연간운영비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내역	산출내역	소요액
인건비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연봉	57,708원 × 1명	57,708
합　계			57,708

○ 세입 변동(연간)

- 다자녀 가정 감면 확대 : △5,115천원(감소)
- 프로그램 수강료 상한 변경 : 최대 15,245천원(증가)

- 순 세입 변동 : 15,245천원 - 5,115천원 = 10,130천원(증가)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3.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10,130**	**10,130**	**10,130**	**10,130**	**10,130**	**50,650**
세　　출		**57,708**	**59,728**	**61,818**	**63,982**	**66,221**	**309,457**
인　건　비		**57,708**	**59,728**	**61,818**	**63,982**	**66,221**	**309,457**
재원 조달		**57,708**	**59,728**	**61,818**	**63,982**	**66,221**	**309,457**
자체 수입	소 계	**57,708**	**59,728**	**61,818**	**63,982**	**66,221**	**309,457**
	자체재원	**57,708**	**59,728**	**61,818**	**63,982**	**66,221**	**309,457**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4. 부대의견

○ 운영시간 정비(조간 시간대 삭제)는 개관 이후 해당 시간대 이용 실적이 없어(0건) 세입 영향 없음

○ 세입 추계는 청소년수련관 2025년 실적(2025. 1. 1.~12. 31.)을 기초로 함

○ 두 자녀 가정 청소년 수는 추정치로, 실제 감면 신청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작성자 : 공항경제국　평생교육과장　한 연 주